

서울고등법원 2024. 6. 26 선고 2023나2024846(본소), 2023나2024853(반소) 판결 [지체상금
등 지급청구 · 공사대금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6. 26 선고 2023나2024846(본소), 2023나2024853(반소)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25 선고 2020가합550389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1. A
2. B
3. C
4. D

변론종결 2024. 5. 29.

판결선고 2024. 6. 26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5. 25. 선고 2020가합550389(본소), 2021
가합517082(반소) 판결

주문

1.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(반소원고) 패소

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(반소피고)들은 공동하여 피고(반소원고)에게 2,795,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

3. 13.부터 2024. 6. 26.까지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들의 항소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 총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%는 원고(반소피고)들이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들에게 각 57,030,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954,747,0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원고들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,603,2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

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나. 피고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655,508,4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

『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의 이 사건 도급계약 지체 사유의 각 발생일을 보면, ① 2018. 9. 20.부터 2018. 11. 1.까지(= H빔 인발 협의로 인한 공사지연), ② 2019. 1. 1.부터 2019. 2. 15.까지(= 골조 시공 시 설계 하자로 인한 공사지연), ③ 2019. 2. 16.부터 2019. 2. 25.까지(=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현장 중단)로,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일인 2019. 6. 30. 이전의 사유들에 불과하다.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2019. 6. 30.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예정일을 기존의 준공예정일(2019. 7. 31.)보다 연장하여 2019. 9. 30.로 정하면서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,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.

피고는 건축주인 원고들의 외출,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로 자재검열이 지연되거나, 대리석 발주가 늦어지는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, 을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일체의 사유[피고가 대체하여

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(제2호),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(제3호),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(제4호)]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다.

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준공일 연장 합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을 제21, 22, 30, 32,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-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“을 제3호증의 2, 9, 10, 12”를 “을 제3호증의 2, 3, 9, 10, 12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의 “원고”를 “원고들”로, 마지막 행의 “원고가”를 “원고들이”로 각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15면 표 순번 제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

1	어머니 이자	3,400,000	갑 제5, 6,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P과 Q이 2019. 1. 5. 원고 B으로부터 270,000,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, P은 피고와 I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, Q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중개해 준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 그런데 갑 제11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, 즉 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‘어머니(원고 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) 이자’ 3,400,000원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, 이자는 차주인 피고 측이 대주인 원고 B 측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, 원고들이 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취지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, ② 원고들은 피고의 위 돈에 대한 미지급 이자채권 상당액을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동역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의 이자를 미지급하여 이자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조차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자동채권의 발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---	--------	-----------	--

-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8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『지 5면).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‘붙임서류’로 공사 원가계산서, 공종집계표 공사 내역서, 가설공사 내역서, 건축공사 내역서, 설비공사

집계표, 전기 집계표가 첨부되어 있다. 그러나 ① 피고가 2019. 12. 31.경 원고들에게 보낸 입금내역서(갑 제7호증)의 정산표에서 피고는 당초 H과의 계약금액인 4,697,000,000원에서 4개 회사 총 입금액 4,080,080,000원을 공제한 616,920,000원을 잔여기성금액으로 청구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‘공사비 총액’을 기준으로 잔여기성금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해온 점,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내용증명 또는 메일(갑 제7 내지 10호증) 내용에 의하더라도 추가공사 항목에 관한 구체적 내역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공사대금 총액에 관한 이견의 조정 정도만 나타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위 각 ‘붙임서류’는 이에 의하여 각 공종의 단가를 그대로 계산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공사대금을 정하는 데에 참고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(이에 제1심 감정인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‘이 계약방식은 일반적인 민간 건축물 공사의 총액계약 방식이라고 판단되었다’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).』

○ 제1심판결문 제28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

『(다) 을 제3호증의 3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순번 2 기재 전기 추가공사 중 ‘중문 설치로 인한 소방감지기 추가 공사(오피스텔 70세대)’와 관련하여 2,795,8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또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위 소방감지기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, 위 소방감지기 추가 공사에 4,269,918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.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순번 11 기재 ‘오피스텔 입구 중문 설치 공사’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해당하고, 피고가 해당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, ② 원고들 주장처럼 중문 설치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면 여기에는 중문에 부착된 필수적인 시설물인 소방감지기에 관한 추가공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, ③ 피고가 주장하는 소방감지기의 시공비 2,795,820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한 예상 소요비용 4,269,918원 이내로, 합리적인 가격 범위 내에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위 2,795,820원을 순번 2 기재 전기 추가공사에 포함시켜 산정함이 타당하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1행의 “(다)”를 “(라)”로 고치고, 제2행의 “부분은”을 “부분 및 순번 2 기재 전기 추가공사 중 ‘중문 설치로 인한 소방감지기 추가 공사(오피스텔 70세대)’ 부분은”으로 고침

○ 제1심판결문 제29면 표 순번 제2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17행의 “중문 설치로 인한 소방감지기

추가 공사(오피스텔 70세대)” 부분을 삭제함

- 제1심판결문 제30면 표 순번 제2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2, 3행의 “을 제3호증의 3의 기재”를 “을 제3호증의 3, 을 제8호증, 을 제25호증의 1,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30면 표 순번 제3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7행의 “을 제3호증의 4의 기재”를 “을 제3호증의 4, 을 제26호증의 1, 2, 을 제27호증의 1, 2, 3, 4, 을 제30호증, 을 제31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30면 표 순번 제4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6행의 “을 제3호증의 5의 기재”를 “을 제3호증의 5, 을 제23호증의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30면 표 순번 제5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4행의 “을 제3호증의 6의 기재”를 “을 제3호증의 6, 을 제23호증의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31면 표 순번 제10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2, 3행의 “을 제3호증의 11의 기재”를 “을 제3호증의 11, 을 제23호증의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31면 표 순번 제13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5행의 “을 제3호증의 14의 기재”를 “을 제3호증의 14, 을 제23호증의 2, 을 제28호증의 1,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침
- 제1심판결문 제32면 표 순번 제1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

피고는 H의 지하터파기 중 구건물 지하실이 철거가 되지 않아 폐기물처

14

폐기물 처리비

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5, 을 제29호증의 1,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의 지하터파기 과정에서 구건물 지하실의 미철거로 인한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또한 원고들과 피고 또는 원고들과 H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.

- 제1심판결문 제32면 표 순번 제15항의 “판단” 부분 중 제1행의 “을 제3호증의 16의 기재”를 “을

제3호증의 16, 을 제14호증의 1, 2,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”로 고침○ 제1심판결문 제32면 표 아래 제3행의 “277,698,446원(= 69,827,446원 + 94,540,777원 + 52,030,223원 + 61,300,000원)”을 “280,494,266원(= 69,827,446원 + 94,540,777원 + 61,300,000원 + 52,030,223원 + 2,795,820원)”으로 고침

○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2행의 “290,000,000원”을 “270,000,000원”으로 고침

○ 제1심판결문 제34면 제2 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

『그렇다면, 공동건축주인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2,034,466원(= 부당이득금 21,540,200원 +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 280,494,266원)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. 3. 13.부터,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인 299,238,646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. 5. 25.까지,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,795,82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6. 26.까지 상법이 정한 연 6%,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,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,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였으므로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위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위 추가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,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현종, 판사 배용준, 판사 건종철